

이 보도자료는 2024. 2. 14.(수) 11:00부터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황우진
전화 02-3219-4420 / 팩스 02-3219-2397

보도자료
2024. 2. 14.(수)

영풍제지 주가조작 중간수사결과 - 단일종목 사상 최대 부당이득 총 6,616억 주가조작, 12명 구속기소 -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제11조 제1항)
-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 하동우)는 3개 팀을 구성, 약 13개월간 총 330여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코스피 상장사 영풍제지(주)의 주가를 조작한 조직의 총책과 핵심 조직원들, 총책의 도주를 도운 변호사 등 총 16명(12명 구속)을 적발·기소하였습니다.

회차	일자	대상자 (주가조작 조직원 12명, 범인도피 사범 4명)
1차	23. 11. 3.	주가조작 조직원 4명(4명 구속 기소)
2차	23. 12. 1.	주가조작 조직원 3명·범인도피사범 1명(4명 구속 기소)
3차	23. 12. 26.~ 24. 1. 5.	주가조작 조직원 2명·범인도피사범(변호사) 1명 (3명 구속 기소)
4차	24. 2. 14.	주가조작 조직 총책 등 조직원 3명·범인도피 사범 2명 (1명 구속 기소, 4명 불구속 기소)

- 주가조작 조직은 총책 A를 중심으로 조직원 총 20여명이 3개팀 ('○○팀', '□□□팀', '△△△팀)을 구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었고, 범행에 이용된 차명계좌 등 증권계좌가 총 330여개이며, 범행으로 취득한 부당이득 합계가 무려 6,616억원에 이르러 현재까지 확인된 단일종목으로는 주가조작 범행 사상 최대 규모로 파악됩니다.
- 검찰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사건을 통보받고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주요 조직원들의 신병을 단기간 내 확보하고, 범행 현장의 주요 증거들을 압수하였으며, 이 사건 초기 조사를 담당한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영풍제지 주식에 대한 거래정지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주가조작 조직의 추가적 수익 실현을 차단하고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 수사 초기 **주범 A의 도주를 도운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를 범인도피죄로 구속**하는 등 위 법무법인 직원, A의 운전기사를 포함한 **범인도피사범 4명(구속 2명)**을 기소하여 **사범방해행위를 엄단**하고, **주가조작사범의 실명·차명 재산을 철저히 추적하여 추징보전 조치**하였습니다.
- 수사팀은 수사 초기 도주하여 증거를 감춘 **주가조작 조직원 수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고, 그 중 **해외 도주한 조직원 1명**에 대해서는 여권무효화, 적색수배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과 다른 공범들이 주가조작 범행을 통해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박탈**할 예정입니다.
- 서울남부지검은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전문수사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금융·증권범죄를 엄단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범죄수익은 한 푼도 챙길 수 없다」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피고인 [16명]

- A 등 총 16명

※ [별첨] 피고인의 지위·처분 참조

2

공소사실 요지

① 주가조작 조직

- '22. 10. ~ '23. 10. 총 330여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주문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영풍제지(주) 주가를 상승시켜 **합계 6,616억원 상당 부당이득 취득**[자본시장법위반]

※ 영풍제지 주가는 '22. 10. 25. 3,484원에서 약 1년 후 '23. 10. 17. 48,400원으로 약 14배 급등(* 수정종가¹⁾ 기준)

1) 수정종가는 해당 주식의 증가에 분할, 배당금 분배, 무상증자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의 활동을 반영한 후의 증가임

영풍제지 주가 상승



('22. 10. 25.) **3,484원** → ('23. 10. 17.) **48,400원**

**약 14배
상승**

【본건 시세조종 주문 유형·규모】

▶ 약 1년간 ① 가장·통정매매 148,615회(약 1억1,788만 주), ② 고가매수 주문 65,924회(약 5,000만 주), ③ 물량소진 주문 12,643회(약 1,112만 주), ④ 시가관여 주문 98회(약 33만 주)·종가관여 주문 168회(약 38만 주) 등 총 227,448회(약 1억7,965만 주)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였음

① 가장·통정매매	가장매매는 주식 거래에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매매를 의미하고, 통정매매는 자기 주식을 매도 또는 매수하면서 상대방과 같은 시기, 같은 가격으로 그 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하기로 사전에 협의하여 매매하는 것
② 고가매수 주문	직전 가격 혹은 상대호가와 대비하여 고가로 매수주문을 반복적으로 내어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것으로서,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보이게 하고 특정 매수 세력이 유입되어 주가가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주문
③ 물량소진 주문	매도1호가에 나온 매도물량을 소화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매수주문을 하여 일반 주식 투자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주문
④ 시가·종가 관여 주문	시가 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시간인 08:00~09:00, 종가 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시간인 15:20~15:30 각각의 호가와 주문수량은 공개되지 않고 예상 체결가격과 예상 체결수량만이 공개되는 상황에서, 예상체결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주문을 함으로써 예상 체결가격을 상승시켜 마치 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주문

2 범인도피 사범

- (M, O, P) '23. 10. 도주한 총책 A를 위하여 차량을 제공하고, 수억원 상당 도피자금을 전달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혼선을 주려고 휴대전화 2대 보관·은닉하는 등 각종 편의 제공[범인도피]
- (N) '23. 10. 도주한 총책 A를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고, 수억원 상당 도피자금을 전달하는 등 각종 편의 제공[범인도피]

3 주요 수사 경과

- '23. 10. 금융위원회 긴급조치 통보(Fast-track)
- '23. 11. 3. 주가조작 조직원 4명 구속 기소
- '23. 12. 1. 주가조작 조직원 3명·범인도피 사범 1명 구속 기소
- '23. 12. 27. 주가조작 조직원 1명·범인도피 사범 1명 구속 기소
- '24. 1. 5. 주가조작 조직원 1명 구속 기소
- '24. 1. 26. 주가조작 조직 총책 체포
- '24. 2. 14. 주가조작 조직 총책 구속 기소

4 수사 결과 및 의의

1 단일종목 사상 최대 규모의 주가조작 범행 적발

- 주가조작 조직은 약 13개월간 다양한 방법으로 모집한 총 330여개의 실명 및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집중적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결과, 영풍제지 주가를 약 14배 상승시키고, 그 부당이득이 **합계 6,616억원**에 이르는 **단일종목으로는 주가조작 범행 사상 최대 규모** 범행을 저질렀음

※ 이전까지 사상 최대 주가조작으로 알려진 'SG증권發 주가폭락 사건'에서 R 일당은 **상장사 8개를 대상으로 약 4년에 걸쳐** 주가조작 범행을 하여, **합계 7,305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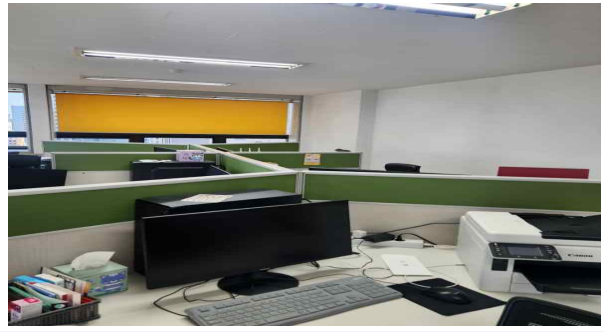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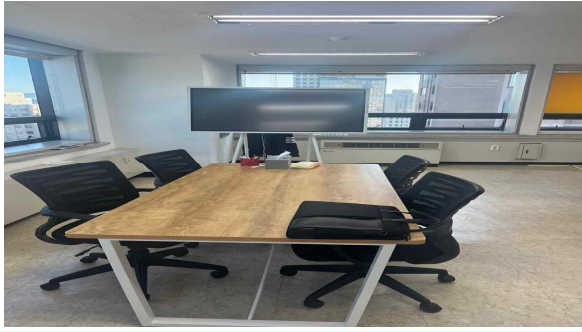
※ 수사팀은 주가조작 조직의 3개 팀 중 1개팀(○○팀)만을 인지한 상태에서 수사에 착수, 수사 초기 부당이득액을 2,700억원대로 파악했으나, 압수물 분석, 조직원 조사 등을 통해 2개팀(□□□팀, △△△팀)의 존재를 추가로 밝히고, 금융감독원과 함께 주가조작에 이용된 200여개 이상의 증권계좌를 추가 특정한 후, 이 사건 부당이득액을 6,616억원으로 재산정한 것임

- 피고인들과 공범들은 상호 긴밀한 의사 연락 하에 ① 가장·통정매매 14만 여회(1억1,700만 여주), ② 고가매수 주문 6만5,000 여회(4,900만 여주), ③ 물량소진 주문 1만2,000 여회(1,100만 여주), ④ 시가관여 주문 98회(30만 여주)·종가관여 주문 168회(30만 여주) 등 전례를 보기 어려운 대규모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였음
- 한편, 주가조작 일당은 거액의 미수거래를 적극 활용하였는데, 영풍제지 주식의 하한가 사태 이후 자기 명의 계좌를 사용한 조직원 상당수는 물론, 증권계좌를 빌려준 계좌주들도 각자 수십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미수금 채무를 떠안는 사례가 속출하였고, 미수거래에 따른 반대매매 물량을 처분하지 못한 특정 증권사 역시 거액의 피해를 입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었음

② 점조직 형태로 은밀히 운영된 주가조작 조직 운영 확인

- 주가조작 조직은 총책 A를 중심으로, 3개팀(‘○○팀’, ‘□□□팀’, ‘△△△팀’)이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팀은 주식매수에 필요한 자금과 증권계좌를 모집·관리하는 조직원(계좌 모집·관리 담당)과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주식매매를 담당하는 조직원(주식매매 담당) 등 총 20여명으로 운영된 사실이 확인되었음
- ※ 일부 주범을 제외한 각 팀 조직원들은 다른 팀 조직원의 신상을 알지 못하고, 서로 연락도 주고 받지 않는 등 수사에 대비 철저한 점조직으로 운영
- 3개 주가조작 팀은 각각의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하고 주요 조직원 간 시세조종 주문 관련 지시, 협의를 제외하고는 서로간 의사 연락을 하지 않음으로써 수사기관의 적발에도 조직의 구성이 쉽게 확인될 수 없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검찰과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와 치밀한 수사로 그 전모가 규명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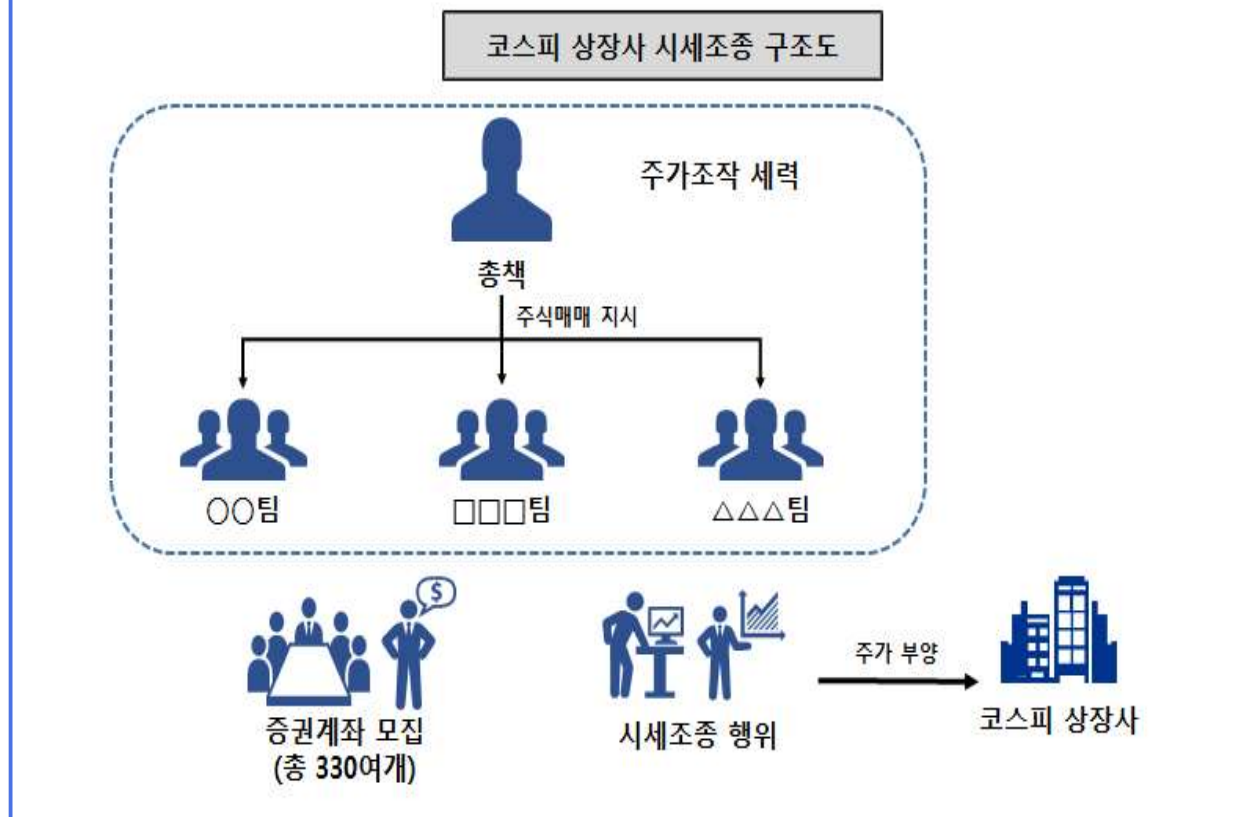
주가조작 범행 현장 사무실 모습



3 금감원의 전문성과 수사기관의 신속 대응으로 실체 규명

- 금융감독원은 주가조작 조직의 혐의를 포착, 전문 분석기법을 동원하여 신속히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수사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금융위원회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 Fast-Track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결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신속한 강제수사 착수가 가능하였음
- 특히, 검찰은 2023. 10.초 금융위원회의 Fast-Track 통보를 받은 직후 강제수사를 위한 기초수사를 단기간에 완료하고 신속히 수사에 착수한 결과 주범 A 외 1명을 제외한 1개팀(○○팀)의 주요 조직원 4명을 동시에 체포하고, 시세조종 범행 현장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여 주요 증거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수사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데 성공하였음
- ※ 강제수사 착수 당일 주가조작 범행을 위해 출근 중인 조직원을 체포하고, 그를 통해 주가조작 범행 현장 사무실을 특정하여 사무실에 출근한 다른 조직원을 체포
- 통상 다수 차명계좌를 이용한 점조직 형태의 은밀한 주가조작 범행은 그 조직의 구조, 시세조종 방법·규모 등 실체 규명이 대단히 어려우나, 신속하고 정밀한 압수수색, 검거 조직원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 등을 통해 주가조작 범행의 전모를 밝힐 수 있었음
- 또한, 검찰은 수사 착수 후 금융감독원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강제수사 착수 이틀만인 2023. 10. 19. 영풍제지 주식에 대하여 거래정지 조치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주가조작 조직의 추가 수익 실현과 투자자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주가조작 조직 범행 구조



4 끈질긴 추적으로 도주한 총책 신병 확보

- 검찰은 도주한 총책 A 등을 검거하기 위해 방대한 분량의 이동경로 CCTV, 통신내역 확인 등 기술적 수단을 동원한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했고, 그 과정에서 다수 도피 조력자들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 연계 추적, 추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 검거에 총력을 기울였음
- 수사팀이 집요하게 추적하며 포위망을 좁혀가던 중 A는 밀항을 시도하다가 서귀포해양경찰에 의해 '24. 1. 25.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수사팀은 다음날 제주지검, 서귀포해양경찰서와 신속한 공조로 A를 체포하였음

※ A는 '24. 1. 24. 09:00경 여수 국동항에서 선박매매를 위해 베트남으로 출항 예정인 말소선박의 선수창고에 은신한 채 밀항을 시도하다 '24. 1. 25. 23:36경 서귀포항에서 서귀포해양경찰에 의해 밀항단속법위반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서울남부지검은 다음날 검사와 수사관을 제주도로 급파하여 '24. 1. 26. 15:02경 총책 A의 신병을 인계받고 체포영장을 집행하였음

총책 A의 검거 당시 모습과 선박내 은신장소 사진



<총책 A의 밀항 시도 경과>

- (1차 시도) A는 '23. 10. 17. 도주 직후 경기도 가평, 포천, 강원도 속초 일대 모텔 등을 전전하다 '23. 12.경부터 밀항을 결심하고, '24. 1. 18.경 경기 의정부에서 밀항 브로커를 만나 베트남으로 밀항하기 위해 목포항, 여수 국동항으로 이동하였으나, 기상악화로 실패
 - (2차 시도) 1차 밀항 시도에 실패한 후 다시 경기도 포천으로 돌아와 모텔에서 숨어 지내다 밀항 브로커의 연락을 받고 '24. 1. 24. 다시 여수 국동항으로 이동한 후 말소선박의 선수창고에 은신한 채 베트남으로 출항
 - (익명 신고) A는 밀항 브로커와 통화할 수 있는 위성 전화기, 밀항 기간 중 시청할 동영상을 저장한 태블릿 PC, 미화 8,800달러(한화 약 1,170만원)를 소지한 채 위 밀항 브로커 외에는 도와줄 사람도 없이 선수창고에서 5일 동안 은신하여 이동할 예정이었으나, 출항 직후 익명의 신고에 의해 '24. 1. 25. 23:36경 서귀포항에서 체포됨
- * A는 밀항 브로커에게 밀항 비용 4억8,0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밀항에 실패하였고, 위 브로커는 사건 직후 해외로 도주한 상태이며, 현재 서귀포 해양경찰에서 밀항 브로커 등 밀항사범에 대해 수사 중임

5 주범을 도피시킨 변호사 등 사범방해 사범 엄정 조치

- 검찰은 총책 A 등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도주 중인 주가조작 조직원의 도피를 도와준 범인도피 사범을 다수 적발하고, 범인 추적의 일환으로 이들을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사범방해사범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 필요성에 따라 범인도피 혐의 자체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하였음

- 특히, A와의 오랜 인연으로 각종 법률 업무를 처리해오던 M 변호사는 ① 이 사건 강제수사 착수 당일 도주하던 A를 자신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만나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시키고, ② 그로부터 휴대폰 2대를 건네 받아 휴대폰 전원을 켜 둔 상태로 법무법인 사무장의 주거지(경기 안산시 소재)에 10일 이상 보관하여 A에 대한 위치추적을 방해했으며, ③ A의 요청으로 A의 운전기사로부터 현금 수익원을 교부받아 수표로 교환한 후 이를 다시 전달한 사실이 적발되어 구속기소되었음

변호사가 총책 A를 차량에 태워 도주시키는 모습



- 한편, 위 M 변호사의 요구를 받아 A에 대한 수사상황 파악 목적으로 공범 C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Q 변호사는, 검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위 C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C의 동의 없이 조사 내용을 실시간으로 M에게 전달하는 등 수사 상황을 무단 유출한 사실이 적발되었는바, 검찰은 위 M 및 Q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협에 징계개시를 신청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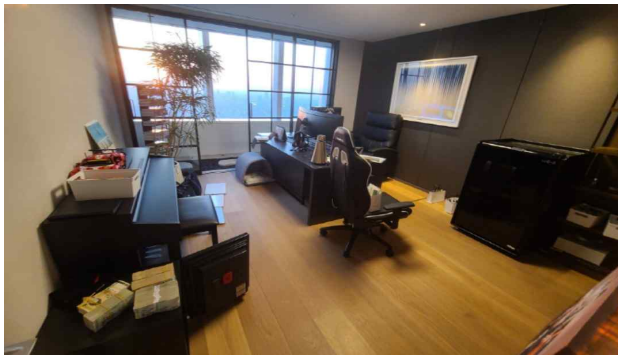
6 주가조작 조직원들의 범죄수익 박탈을 위한 재산동결 조치

- 주가조작 조직원들이 이 사건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박탈하고 이를 국고로 환수하기 위하여, 이들이 시세조종에 이용한 차명 증권계좌, 범죄수익이 입출금된 은행계좌,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한 추징 보전을 신속히 완료하였음

※ 시세조종에 이용한 증권계좌를 포함하여 조직원들 및 관련 법인 계좌 총 353개 계좌에 대해 추징보전

- 주가조작 조직원들이 초고가 오피스텔에 거주하거나, 수억원에 달하는 현금 봉치, 명품 가방 등을 소지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물로서 압수하거나, 책임 재산에 대해 추징 보전하는 등 필요한 동결 조치를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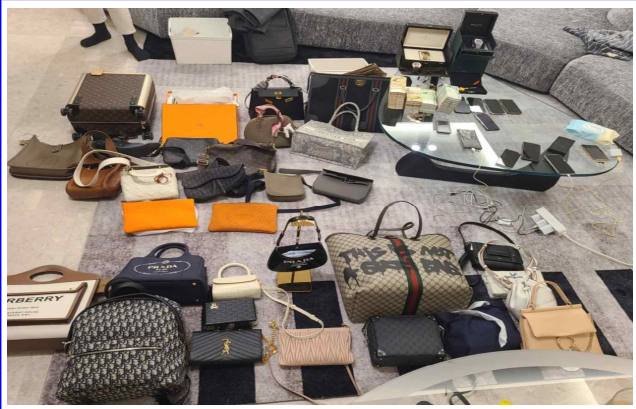
주가조작 조직원의 고가 오피스텔 사진



주가조작 조직원 보관 현금 사진



주가조작 조직원의 명품 가방 사진



<‘MZ세대’ 주가조작 조직원들의 적나라한 실상 확인>

- 이 사건 수사를 통해 ‘MZ세대’ 주가조작 조직원들의 실상이 확인되었는바, 이들은 동향 출신의 20~30대 또는 과거 같은 유사투자자문회사에서 근무하여 친분을 가진 인물 등으로 구성되었음
- 이들은 한강 뷰가 펼쳐진 초고가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수억원대 슈퍼카를 운전하고, 수억원씩 현금을 소지하며 고가 명품을 구입하고, 총책 A와 함께 유흥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하거나 수시로 강남 소재 고급 유흥주점에서 거액을 소비하는 등 주가조작 범죄 수익으로 과시적 호화생활을 영위하였음
- 한편, 이들은 검찰 수사가 개시되자, 회합·모의를 통해 도주한 주가조작 조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남은 조직원들은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가장하기로 하고, 그러한 취지로 도주한 조직원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해두기도 하였음(검찰 압수수색에서 해당 고소장 확보)


5

향후 계획

- 현재 수사팀은 수사 착수 직후 도주하여 종적을 감춘 주가조직의 일당 수 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며, 여권무효화, 적색수배 조치가 진행 중인 해외 도주 주요 조직원 1명에 대해서는 사범공조 등을 통해 국내 송환을 추진하는 한편, 주가조직에 관여한 추가 공범은 물론, 조직원들의 도피를 도운 사범방해사범도 계속 수사할 예정임
- 피고인들의 범행이 초래한 사회적 피해가 심대한 바, 피고인들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이들 주가조직 조직이 범행을 통해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할 것임

※ 한편, '24. 1. 19. 시행된 자본시장법상 형벌감면 신청 제도를 활용하여 자수·자발적으로 신고하거나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등 수사·재판 절차에서 협조하는 경우 감경 구형을 검토할 예정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상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시세조종 등)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 검거를 위한 제보를 하는 경우 형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제도가 도입됨

- 서울남부지검은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전문수사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금융·증권범죄를 엄단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범죄수익은 한 푼도 챙길 수 없다」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별첨】

피고인 지위 · 처분

① 주가조작 조직

	피고인(나이)	지위	처분
1	A(54세)	총책(주가조작 총괄)	'24. 2. 14. 구속기소
2	B(49세)	'○○팀' 조직원(주식매매 관리)	'23. 11. 3. 구속기소
3	C(55세)	'○○팀' 조직원(주식매매 담당)	'23. 11. 3. 구속기소
4	D(47세)	'○○팀' 조직원(주식매매 담당)	'23. 11. 3. 구속기소
5	E(55세)	'○○팀' 조직원(주식매매 담당 · 자금 관리)	'23. 11. 3. 구속기소
6	F(28세)	'△△△팀' 조직원(주식매매 담당)	'23. 12. 1. 구속기소
7	G(29세)	'△△△팀' 조직원(증권계좌 모집 · 자금 전달)	'23. 12. 1. 구속기소
8	H(36세)	'△△△팀' 조직원(주식매매 담당)	'23. 12. 1. 구속기소
9	I(29세)	'△△△팀' 조직원(주식매매 담당)	'23. 12. 26. 구속기소
10	J(36세)	'△△△팀' 조직원(증권계좌 모집 · 관리)	'24. 1. 5. 구속기소
11	K(50세)	주가조작 가담자(주식매매 담당) ※ '24. 1. 2. 자수	'24. 2. 14. 불구속기소
12	L(51세)	주가조작 가담자(A의 여동생, 주식매매 담당) ※ '24. 1. 16. 구속영장 기각	'24. 2. 14. 불구속기소

② 범인도피 사범

	피고인(나이)	지위	처분
1	M(53세)	변호사(법무법인 ◇◇ 대표)	'23. 12. 27. 구속기소
2	N(54세)	총책(A)의 운전기사	'23. 12. 1. 구속기소
3	O(48세)	법무법인 ◇◇ 사무장 ※ '23. 11. 17. 구속영장 기각	'24. 2. 14. 불구속기소
4	P(48세)	법무법인 ◇◇ 사무장 ※ '23. 11. 17. 구속영장 기각	'24. 2. 14. 불구속기소